

□ 자재·약제		검정신청서		처리기간	
				해양유류오염 확산 차단장치, 유처리제, 유흡착제, 유겔화제	5일
				생물정화제제	60일
① 품명			② 형식승인번호		
신청인	③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)		④ 생년월일		
	⑤ 주소		(전화번호:)		
⑥ 형식 및 규격·용량			⑦ 수량		
⑧ 제작·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					
⑨ 제작·제조 및 수입 연월일					
⑩ 검정을 받고자하는 장소 및 일자					
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 해양경찰연구센터장 귀하					
구비서류: 없음				수수료	
				제83조제1항에 따름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